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줌줌 · 응모·실무 가이드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판정과 재산 산정: 헛갈리...

루리의 줌줌이 정리한 글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판정과 재산 산정: 헛갈리는 사례별 점검

루리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 여부까지 따져요.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항목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아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과 동거 여부까지 따져요.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항목을 합산하며 부채는 빼지 않아요.

국세청·국세상담센터 안내와 법령 서식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2026-10-27 작성). 금액과 신청 일정 같은 기본 설명은 같은 사이트의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 글을 참고하세요.

1. 1. 부양자녀 요건 세 가지

국세상담센터 자료로는 아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해요.

요건	기준
나이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으로 안내)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동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함

또한 같은 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히는 자녀는 안 돼요. 18세 기준일과 장애인의 세부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2. 헛갈리는 사례로 점검하기

아래는 설명용 가상 사례예요.

- **자녀가 알바로 번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질 수 있어요. 총수입과 소득금액은 다른 개념이라 계산 방식은 공식 확인하세요.
- **이혼·별거로 따로 사는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와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누가 신청할지의 세부 판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 부양자녀 범위에 직계비속 외 가족이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같은 자녀를 부부가 각각 신청:** 한 가구로 판정되므로 자녀를 이중으로 올릴 수 없어요.

3. 재산 산정 항목

기준일은 해당 연도 6월 1일이고, 2026년 신청분(2025년 귀속)은 2025년 6월 1일 현재예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구분	포함 항목(법령 서식 기준)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승용자동차(영업용·승합·화물 제외)
보증금	임차보증금(전세금)
금융	현금, 예금·적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대출이 있어도 재산 총액은 줄지 않아요.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 평가 방법(공시가격 등)과 주식·회원권 같은 기타 항목의 세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구분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필요 여부	불필요	부양자녀 필요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7,0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단독 포함	홀벌이·맞벌이만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두 장려금은 각각 요건을 따져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5 5.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돼요. 지급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로 안내돼요.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분이 차감돼요.

6 체크리스트

- 자녀가 18세 미만이다(장애인은 별도 확인)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다
-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홀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 자녀는 해당되나요?

A.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보통 해당되지 않아요. 장애인 예외는 공식 확인하세요.

Q.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임차보증금이 법령 서식의 재산 항목에 있어요. 평가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재산이 6월 이후 바뀌면요?

A. 기준일은 6월 1일 하루라서 그 이후 변동은 해당 신청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세부는 공식 확인하세요.

8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7782&mi=245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lId=7782&mi=2451>)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lId=7784>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lId=7784>)
-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04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https://www.law.go.kr>)
- 소득금액 계산, 별거 시 신청자, 재산 평가 방법: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다른 고민 보기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9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